

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1998. 7.
제출자 : 이천시장

제안이유

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, 관내 도로
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문제점을
개선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가. 도로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·조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볼(안 제4조).
- 나. 도로관리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심의회를 두(안 제6조).
- 라. 도로관리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(안)

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이천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등) ①이천시도로관리심의회(이하 “관리심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종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1.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(군부대를 포함한다)의 공무원
2.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
3.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·조정
2.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
3.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·관리
4.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
5.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
6.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

제3조 (위원장의 직무 등) ①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, 관리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 (위원의 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.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.

제5조 (회의) ①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관리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관리심의회가 제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·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글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.

제6조 (소심의회) 관리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 상 20인이하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·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·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.

제7조 (간사 등) 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토목계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.

③ 간사는 관리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회의록을 비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 (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) 관리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을 관리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 (수당)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 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